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과 관련한 자치구·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지방청사, 종합회관 등의 신축시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별표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.(안 제45조)

3. 관련조례 및 지침

-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(청사등의 설계)
-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 시달

[행자부 공기 13330-560(02.8.12)호]

4. 검토의견

- 이번 조례개정안은 청사·종합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경우에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도록 산정기준이 시달이 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
- 개정조항 별표내용중 제1번 “시·도, 시·군·자치구의 본청”을 구본청으로 수정하고 “가”항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은 구본청 및 동청사 외에는 전부 삭제되어야 하고, “나”항 부속공간 면적은 상황실증 “구”만 해당되며 나머지는 삭제되어야 함.

- 제2번 제목 시·도, 시·군·자치구의회 청사는 구의회를 청사로 수정하고 “가”항 시·도 의회는 내용전부를 삭제해야 하며 “나”항 시·군·자치구의회는 구의회로 수정해야함.
- 제3번 제목 시·군·자치구 종합회관은 구 종합회관으로 수정하고,
- 제5번 농업기술센터는 내용전부가 삭제되어야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.

2002. 10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죄 삼 립